

포상규정



사단
법인 **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**

(사)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포상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회의 세칙 제 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의 관련 산업에 관한 학문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.12>

제2조(포상종류) 포상자는 본 회의 회원 또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 7. 21>

1. 학술상: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 관련 산업의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.
2. 기술상: 조선해양기자재 및 그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.
3. 우수논문상: 창의성과 탁월한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본 학회지에 게재한 자
4. 젊은 연구자상: 학문적 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서 만 40세 이하인 자.
5. 학술대회 공로상: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.
6. 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: 당해 연도 전·후기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중 좌장 및 편집위원으로부터 우수논문으로 추천된 자

제3조(학술상 및 기술상의 후보자 추천)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수시로 접수하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.

1. 추천 사유서 1통
2. 피추천자의 이력서
3.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자료 (논문, 저서, 제품, 기타)

제4조(추천자격) ① 학술상과 기술상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.

1.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공동명의
2. 학술 단체 및 연구소의 장
3. 사업체의 장
4. 대학의 총장 및 학장

② 우수논문상과 젊은 연구자상 및 학술대회 공로상의 추천은 본 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.

제5조(수상자의 선정) 수상 예정자는 매년 본 회의 회장이 위촉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수상 예정자는 본 회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수상자로 확정한다. 포상자 후보 선정방법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1.11>

제6조(상의 명칭) 상의 명칭은 포상기금 기탁자를 예우하여 기탁자 자신 또는 소속 단체의 명의를 붙일 수 있다.

제7조(시상) 상은 매년 학술대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되 시상 내용은 상장과 상금으로 한다.

제8조(기금) 본 상의 포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상의 기금에서 충당한다.

제9조(기금 운영) 본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한국박용기관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논문상 규정을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6년 7월21일부로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